

GANGJIN 

Web Contents



목차

목차	2
허가신고	3
허가.신고절차	3
옥외광고물의 설치수량	3
허가신고 구비서류	3
허가.신고대상	3
허가(신고)대상 광고물 검토사항	4

옥외광고물이란

지정계시대

허가신고

안전도검사대상

허가.신고절차

※ 광고물은 설치 전에 반드시 허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1. 신청서 작성 - 공통서류 : 허가(신고) 신청서, 토지(건물) 사용 승낙서
2. 허가·신고 접수 - 처리기한 : 7일 이내(신고 3일 이내)
3. 서류검토 - 수수료 계산, 안전도검사 수수료
4. 현지확인 - 표시방법 등 적정성 여부 확인
5. 표시허가 - 허가증 교부

옥외광고물의 설치수량

-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: 2개 이하(꼭각지점, 앞.뒷에 도로를 접한 업소 1개 추가 가능)
- 위 1호를 제외한 지역 : 1개 이하(꼭각지점, 앞.뒷에 도로를 접한 업소 1개 추가 가능)

허가신고 구비서류

구분	허가	신고
신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1. 옥외광고물 표시허가(신고) 신청서 ▪ 2.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수 있는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▪ 3.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설계도서 ▪ 4. 토지건물의 소유관리자 사용승낙서 ▪ 5. 안전점검 신청서 ▪ 6. 심의관련 서류(심의대상의 경우) ▪ 5. 건물의 구조안전확인 서류(대상일 경우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1. 옥외광고물 표시허가(신고) 신청서 ▪ 2. 토지건물의 소유관리자 사용내낙서 ▪ 3. 심의관련 서류(심의대상의 경우) ▪ 4. 건물의 구조안전확인 서류(대상일 경우)
연장	위의 1호, 4호, 5호	위의 1호, 2호, 4호

허가.신고대상

			표시기 간
--	--	--	----------

광고물의 종류	허가대상 광고물 (법 제3조, 시행령 제4조)	신고대상 광고물 (법 제3조, 시행령 제5조)	(시행령 제8조)	처리부서
가로형 간판	4층 이상 층의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면적 5제곱미터 초과인 것 ■ 건물의 3층 이상에 표시하는 것 	3년 이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허가사항 ■ 군청 건설과 ■ 신고사항 ■ 읍/면
돌출간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간판 윗부분의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것 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것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의료기관·약국의 표지등 또는 이.미 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■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		
지주이용 간판	간판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	간판 윗부분까지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것		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옥상광고물 ■ 애드벌룬 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■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■ 선전탑 ■ 아치 광고물 ■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광고물 ■ 버스, 사업용 화물자동차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■ 네온 등 기타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(허가대상 광고물은 제외) ■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광고물 ■ 세로형 광고물 		
		현수막, 벽보, 전단	10일 이내	읍면 (2개 읍.면 이상 해당 될 경우 군청 건설과)

허가(신고)대상 광고물 검토사항

간판의 종류	검토	비고
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가로의 최대크기는 10미터 이내 ■ 가로 크기는 건물의 폭 이내, 세로 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 ■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 ■ 업소별 1개(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2개) ■ 1~3층 까지만 표시 가능 ■ 4층 이상에는 건물명,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상단 중 3면에 입체형으로 부착 ■ 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는 하나의 간판을 부착 가능 	도 조례 제5조
돌출간판의 표시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(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) ■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.2미터 이내, 세로의 길이는 2.5미터 이내(상업지역은 3.0미터) ■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 ■ 건물의 전면폭이 10미터 이하인 건물은 1줄, 10미터 초과시마다 1줄씩 추가 ■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 	도 조례 제7조

(<http://www.gangjin.go.kr>)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목조 및 가설건축물은 표시허가 불가 	
옥상간판의 표시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표시가능 최저층수 : 3층 ~ 15층 ▪ 높이 8미터 이내로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미만 	영 제15조
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당해업소 등의 건물부지 안에 설치 ▪ 상단까지의 높이는 5미터 이내, 1면의 면적은 5제곱미터,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 미만 ▪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터미터(보도가 없는 도로의 경우 1미터) 이상 거리를 둠. 	도 조례 제10조

- 한글로 표시(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한글과 병기)
-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됨
- 이동이 가능한 간판 표시 금지

COPYRIGHT © GANGJIN-GUN. ALL RIGHT
RESERVED.

GANGJIN

Web Contents

